〈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260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1-10-12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4-29

육 미 다 담

정 보 공 개 서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에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대표전화 : 1533-1695 팩스 : 02-332-279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가맹본부 / 070-4106-4996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1028호 (동교동, LG팰리스빌딩)

목 차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의 연혁
- 3. 가맹사업의 업종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8. [육미다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5. 영업지역 보호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XI.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준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별첨서류

[※ 별첨] 필수설비 리스트

[※ 별첨] 필수집기 리스트

[※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4]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5] 별지 제5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첨6] 별지 제6호 서식: 손익계산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 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 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 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ı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육미다담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1028호 (동교동, LG팰리스빌딩)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딜리셔스월드 에프앤비	2021-07-08	2021-08-02	임준성	비공개	02-332-2799
	법인등록번호	110111-7949237	사업자등록번호 210-81-80		210-81-8000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마	포구 양화로 156 LC	G팰리스 1028호
임원	임준성	육미다담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준성	1533-1695	02-332-27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마	포구 양화로 156 LC	G팰리스 1028호
임원	임재훈	육미다담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준성	1533-1695	02-332-27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마	포구 양화로 156 LC	G팰리스 1028호
임원	임세훈	육미다담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준성	1533-1695	02-332-279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I	_	_	1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_	_	1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_	_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_	_	_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육미다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육미다담	-
상 호	육미다담 OO점	가맹점 구분
상표(서비스표)	_	_
광 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	_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6,002	495	25.507	_	-2,858	-2,850
2022년	24,461	15,337	9,124	_	-18,038	-18,025
2023년	3,700	22,673	-18,973	_	-28,097	-28,09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이르	A TIO		사업경력	
구분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임준성	대표이사	2022. ~ 현재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재훈	사내이사	2021.07. ~ 현재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사내이사	영업
	임세훈	사내이사	2021.07. ~ 현재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사내이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_	_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74	임원-	수(명)	TIOLA/III)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3	_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자	임준성	다른 가맹본부 [(주)후니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	2016년 1월~ 현재	홍대개미(등록번호:20160621)
			2022년 7월29일~	혼고집(등록번호:20212600)
가맹본부	(주)딜리셔스월 드에프앤비	가맹사업경영	예정	혼고밥(등록번호:20212599)
	_		예정	육미다담(등록번호:20212601)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_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	_	_	_
권리범위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Ш

가맹본부의 [육미다담] 가맹사업 현황

1. [육미다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예정

2. [육미다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딜리셔스	육미다담	임준성	예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8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에프앤비		220		광성로6길 34 1층 우측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028호

3. [육미다담] 업종

영업표지	업종		
0 01515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육미다담 	한식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구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육미다담]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	2021,12,31	-	2	2022,12,31		2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_	_	_	_	_	_
서울	-	_	-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	_	-	_	_	_	_	_	_
전남	-	_	1	_	_	_	-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육미다담]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_	_	_
2022	_	_	_	_	_	_
2023	_	_	_	-	_	_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8	사호/이르	ad a T	정보공개서	OL 조	가맹점/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7100 H H	㈜딜리셔스월드	혼고밥	20212599	한식	_	_	1
가맹본부	에프앤비	육미다담	20212601		_	_	_
특수관계인	㈜후니에프앤비	홍대개미	20160621	한식	60	64	52

11

(단위: 개)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11 7		ol Odzi πi	フロスのは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맹점사업자! 상한	의 연간 평 면적 3.3m ² 당	さいさい	면적 3.3m ² 당	비고
		매돌액	3.3111 7		3.3111 7		3.3111 7	
전체	_	_	_	_	_	_	_	_
서울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1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1
경기	_	_	_	_	_	_	_	1
강원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 해당 사항 없음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육미다담]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_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AFL	7171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브	шэ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	비공개	비구제	0	0	0	
판촉	_	비공개	_	_	_	
합계	_	-	0	0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본부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99-8000 (직통: 02-2151-358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 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O조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개월 소요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Ⅲ.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N.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육미다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철거공사, 주방덕트, 전기증설공사, 냉난방기, 소방 공사, 가스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포 면적 및 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1. 가입비 2. 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 계약 해제 시 당시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총 계	8,800	_	_	_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잔존채무,손해배상액 등과정산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합 계	10,8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면적 3.3㎡당금액 [®]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39,600	1,980	협력업체		미공사시	[20]평 기준 3.3㎡ 당 [1,980]천원			
필수주방설비	24,200	1,210				[20]평 24,200 [30]평이상 26,400			
간판사인	11,000	550	가맹본부 -			외부 / 내부 / 돌출 각 1개소			
의탁자	6,600	330		가맹본부	가맹본부	계약체결과 동시	제공 후 반환 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계약체결과 안됨/제공 전 이동식의자,	이동식의자,
화로	11,000	550			지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20]평 11,000 [30]평이상 15,000~			
POS	2,530	126				티오더 (테이블 당) 메인포스/ 주방포스/ 카드리더기 일체			
오픈초도물품	3,300	165				메뉴판, 인쇄물, 유니폼, X배너, 물티슈 등			
총 계	98,230	4,911	_	_	_	-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를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 및 감리 대가로평당 [330]천원을(부가세포함)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비용(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외부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희망 영업지역 파악 → 최소 점포기준 66㎡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점포계약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성년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사업자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성년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cdot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로얄티	가맹본부	월 총 매출의 3.3% (부가세 제외)	익월5일			정기 납입금 (총매출 = 카드매출+현금매출)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 금액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가맹본부	30%(가맹본부) 7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 상품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50%(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 :0%(가맹점사업자)	I	I	I	가맹점모집광고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점포환경 개선비 용	가맹점자율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점자율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 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차액 가맹금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한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

를 포괄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는 제거, 영업 관리자산의 반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계약종료일에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중단일로부터 1년간 계약 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을"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 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 안과 "갑"만의 고유 익스테리어(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 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 2. "을"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다.
-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4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약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시 "갑"이 "을"에게 계약 조건으로 무상제공 한 각종 제반 비용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7조 (손해의 배상)]

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경우 1일당[금 이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도서·산간지역 제외)

ΛHJ	# B (FLOI)	공급가격	공급가격 (단위: 원)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구분	
1	-	_	_	-	
2	-	_	_	_	
3	-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육미다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제품,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_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육미다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연간 거래총액)	비고
-	_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육미다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 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별첨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 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가맹본부가 권장한 가격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OIXL OLA HIOL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육미다담과 동일한 업종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구이)	육미다담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서에 첨부되는 지도상의 표시구역으로 기존 가맹점과의 이격거리는 보행로 기준 50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역세권이 다른 경우 또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2호,3호서식)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할인마트) , 대형 쇼핑센터, 대학교, 복합건물 식당가 , 지하철(기차)역, 병원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계약서에 특수상권명 기재(별지 3호 서식)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 3호 서식)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서면 통지 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육미다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_	_	-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6조 제2항 (계약기간과 갱신)]

-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을"이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 오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5조 제 1항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개월의 여유를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영업상 비밀 공개 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 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 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5조 제 2항 (계약의 해지)]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 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원 할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 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20조 (경업금지 의무)]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육미다담과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문의:
(소고기, 돼지고기 구이)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운영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 영업시간 범위 내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연중무휴	문의: 운영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20평 기준)	직접 근무(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HL! M#1	шэ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70% (가맹점 수로 균분)	-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이벤트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 사후결과 공고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 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 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제공하는 노하우 및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갑"의 영업노하우 및 육미다담만의 독특한 시스템, 독특한 서비스 방법, 독특한 제조 방법 등고유한 육미다담만의 시스템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 ③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제1항 내지 3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O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25조(자점매입금지),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7조 (손해의 배상)]

-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약 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을"이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O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금이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 ⑥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 본부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49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① "을"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일	위약금(부가세포함)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지급한 가맹비의 50%	

② 인테리어, 기기, 시설, 물품공급, 교육 등 이행이 진행된 경우, 제1항 위약금과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 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_		
상담	전화 상담사업내용상담	_		
정보공개서 제공	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점포실측/설계	점포실측/설계 - 점포 규격에 따른 투자비산출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32(1일)	참조 바람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1(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1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교육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집기입고	점포 집기입고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점포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 희망자-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W.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환경개
o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이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가맹사업거	선일로부터
인테리어 등의 노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	전을 수반하지 않는	용 청구(공사계약	래의 공정	3년 이내에
후화가 객관적으로	바집기의 교체비용	점포환경에선 :	서 등 공사비용을	화에 관한	가맹 본부 의

	0 = 0 = 0 = 0 = 0 = 0			1	
인정되는 경우	을 제외한 실내건	20%	증빙할 수 있는 서	법률 제12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	축공사에 소요되는일	o점포의 확장 또는 이	류 참위) → 90일	조의2 규정	
함으로 인하여 기행	체의 비용 단, 가맹	전을 수반하는 점포	이내에 기맹본부 부	에 의해 부	
사업의 통일성을 유자하	사업의 통일성과 무	환경개선 :	담액을 기맹점시업자	담 제 외 사 유	
기 어렵거나 정상적	관하게 가맹점사업	40%	에게 지급	해당 시	
인 영업에 현저한	자가 추가 공사를		(단, 가맹본부와 가		
지장을 주는 경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		맹점사업자간 별도의		
우	는 비용은 제외)		합아 있는 경우 1년의		
	_ • - ,		뱀위내에서 분호대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		#HO104L ¥ F
			에는 점포환경개선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이 끝난 날부터		· I
			90일 이내에 가맹		종료(계약의
			본부 부담액을 지		해지·영업양
			급		도 포함되는
			〈분할지급 시 절차〉		경우 가맹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본부 부담
			용 청구(공사계약서		액 중 잔
			등 공사비용을 증빙		여기간에
			할 수 있는 서류 첨위		비례하는
			→ 3차에 걸쳐가		뷔담액은 지
			맹본부 부담액을 분		급하지 아니
			할 지급		하거나 이
			(1차 : 청구일로부터 90		미지급한
			일 이내,		 경 우 에 는
			총 부담액의 30%, 2		환수 가능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 ' '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네, 중 구함액의 40/8)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 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관리팀 (1533-169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괴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지원팀 (1544 -9 276)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ML.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규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기	최초 계약 시 이수	신메뉴 출시 등	수시
교육대상	신규 오픈 가맹점 (양도양수 지점 포함)	전 가맹점	매출 부진점 QSC 평가 부진점 고객클레임 다수 발생점
교육시간	7 일	별도 계획	별도 계획
교육내용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개점 전 조리 / 서비스 교육	메뉴 조리방법 등	경영방침 영업 활성화 서비스 마인드 함양 취약점 강화교육
비용 [부가세 별도]	기본 3,000,000 원 [가맹점사업자 포함 3 인 이하] / 추가[1 인당] 별도 협의	필요시 산정	필요시 산정
비고	필수	필수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3조 (개점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644-O1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사업 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필수설비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설비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첨] 필수집기 리스트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 서울특별시장
<u> </u>	※ 상기 설비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첨] 공급 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공급 상품 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육미다담	
성명(대표자)	주식회사 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주소(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028호	
3	₩ (금	원 정)
계좌		
의 계좌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다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육미다담 성명(대표자) 주식회사 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주소(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028호 당 (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 서신]
-----	-----	-------

[영업지역의 표시]

*일반상	권일 경우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	권일 경우 특수싱	권의 명칭 기재	
[특수상권명]			
[47020]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와 가맹점 인근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레코이	20	13	01	01	레고비베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방법			
가맹본부 :				(주)딜리셔스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bigcirc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와 가맹점 인근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방법	

 가맹본부 :
 (주)딜리셔스월드에프앤비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호 서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